

제287회 시의회 정례회
기획경제위원회

I·SEOUL·U
너와 나의 서울

서울산업진흥원

정 관 변 경 보 고

2019. 6. 18.


Seoul Business Agency

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

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

□ 개 요

- 관련근거 :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3

제55조의3(조례상보고 등) 시장 및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.

□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

○ 변경 사유

-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9조에 의거 「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에 따른 근로자 명칭 변경 반영

○ 변경 내용

- 근로자이사 → 노동자이사, 근로자 → 노동자 (제9조 및 제10조)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9조(임원의 임면) ① 생략 ②이사는 선임직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분하며, 선임직이사에는 <u>근로자이사</u>를 포함하고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1~3. 생략 ③~⑨ 생략</p>	<p>제9조(임원의 임면) ① 현행과 동일 ②이사는 선임직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분하며, 선임직이사에는 <u>노동자이사</u>를 포함하고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1~3. 현행과 동일 ③~⑨ 현행과 동일</p>
<p>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<u>근로자이사</u>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<u>근로자투표</u>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 ②~④ 현행과 동일</p>	<p>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노동자이사</u>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<u>노동자투표</u>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 ②~④ 현행과 동일</p>

관련

○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안내 (공기업담당관-3904, 2019.3.29.)

근거

○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(서울특별시조례 제7044호, 공포일 2019.3.28.)

향후 추진계획

- 이사회 의결 : '19.6월
- 서울시장 승인 : '19.7월
-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허가 : '19.7월

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(안)

서울산업진흥원 정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 2 장 임원 및 직원

제9조(임원의 임면) ①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7.09.27>

②이사는 선임직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분하며, 선임직이사에는 **노동자이사**를 포함하고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16.10.28., 2017.09.27., 2019.6.**>

1. 서울특별시 경제일자리기획관 <개정 2015.2.26., 2017.6.27., 2019.3.28>
2.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<개정 2016.06.17>
3.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<개정 2017.09.27>

③감사 2명중 1명은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
④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대표이사·선임직감사·선임직이사는 시장이 임명한다. 단,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

⑤대표이사가 임명된 경우, 시장은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,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08.26>

⑥삭제 <2015.08.26>

⑦삭제 <2015.08.26>

⑧시장은 대표이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.

⑨선임직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**노동자이사**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**노동자**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 <개정2015.5.26., 2016.10.28., 2018.3.29., 2019.6.**>

②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 <신설 2018.3.29>

③당연직이사와 당연직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, 후임자가 승계한다.

④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9조(임원의 임면) ① 생략</p> <p>②이사는 선임직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분하며, 선임직이사에는 <u>근로자이사</u>를 포함하고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~3. 생략</p> <p>③~⑨ 생략</p>	<p>제9조(임원의 임면) ① 현행과 동일</p> <p>②이사는 선임직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분하며, 선임직이사에는 <u>노동자이사</u>를 포함하고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~3. 현행과 동일</p> <p>③~⑨ 현행과 동일</p>
<p>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<u>근로자이사</u>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<u>근로자투표</u>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④ 현행과 동일</p>	<p>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노동자이사</u>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<u>노동자투표</u>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④ 현행과 동일</p>